

# 서울특별시 서울함공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169
----------	------

2023년 9월 13일  
환경수자원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장
- 나. 회부일자 : 2023년 8월 21일
- 다. 상정일자 : 제320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5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3년 9월 13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 가. 제안이유

- 서울함공원은 서울함(호위함)과 참수리 고속정, 돌고래급 잠수함 등이 전시되어 있는 공원으로서 호국 정신을 고취함과 동시에 시민들에게 도심의 휴식 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임.
- 서울함공원 시설 유지관리 외에도 각종 전시·공연 프로그램과 고객 홍보 및 마케팅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중이며,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및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3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위탁사무명: 서울함공원 시설관리 및 운영

□ 위탁기간: 3년(2024.01.01. ~ 2026.12.31.)

□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제13조(위탁운영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추진 필요성

- 서울함공원의 시설관리 및 각종 행사 진행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성과 노하우가 필요한 사무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추진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성 강화가 필요하며

- 안보·테마 공원으로서 해군과의 협업, 관람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 안보 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해 재위탁 추진코자 함

□ 위탁사무 내용

○ 함상공원 관리: 공원 청소 및 관리, 시설물 유지보수 및 경비, 이용자 안전 확보

○ 프로그램 운영: 전시기획, 문화공연, 체험행사 등 프로그램 운영

○ 홍보·마케팅: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홍보 및 관람객 유치

○ 성과관리: 연간 운영성과 분석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시행

○ 기타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에서 요청하는 사업 수행

□ 시설 개요

○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나루길 407(망원한강공원 내 리틀야구장 옆)

○ 규모: 대지면적 8,275 $m^2$

○ 시설물: 안내센터(485 $m^2$ , 2층), 퇴역함정 3척, 도교 및 정박시설, 미디어월 등



〈 시설별 위치도 〉



〈 서울함 〉



〈 고속정 〉

- 인력현황: 정원 8명, 상근 7명<sup>1)</sup>
- 위치도



- 수탁자 선정 방식: 재위탁(공개모집)
- 소요예산: 966백만원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적정(2023.07.05.)

1) 센터장 1명, 행정·안내반 3명, 전시·행사반 1명(비상근 1명), 시설·미화반 2명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제12조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제13조

#### 나. 예산조치 : 2024년 민간위탁 예산 편성

####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타 : 종합성과평가 결과 75.18점<sup>2)</sup>

※ 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10조(종합성과평가 대상 사무)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수탁기관 선정)제2항 : 전체 배점의 75점 미만 시 해당 수탁기관과 재계약 배제

## 4. 검토보고 요지

### 가. 개요

- 본 동의안은 서울함공원 민간위탁 기간 만료('23.12.31)에 따른 재위탁을 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이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임.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나. 검토 의견

#### 1) 서울함공원 운영 현황

- 망원 한강공원 내에 위치한 서울함공원은 서울시 유일의 함상 공원으로 퇴역함정을 재활용하여 역사·안보·평화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17년 조성되었으며,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관리 중인 시설임.
- 동 시설은 연면적 8,275㎡ 규모로 안내센터, 퇴역함정 3척, 도교 및 정박 시설, 미디어월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7년부터 현재까지<sup>3)</sup> 위탁 업체(㈜씨엔피트러스트 공동수급체)가 운영·관리<sup>4)</sup> 하고 있음.

3) 별첨 참고: 민간위탁 추진 경위

4) 2020년도에 있었던 제5차 민간위탁운영 평가위원회의 심의내용을 살펴보면, 제시한 사업목적과 위탁사무의 내용 등을 심의하여 조건부 적정 결정을 내렸음. 해당 조건은 재계약을 재위탁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이었고, 이 내용을 반영하여 공모로 선정되어 운영 중인 것임.

## 2)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본 동의안은 외부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서울함공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오랜 기간 관련 역량을 쌓아온 외부 민간기관에 위탁(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제12조 및 제13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음.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제12조〉

**제12조(공원이용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한강공원의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별표 1**에 정한 공원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서울함공원은 별표 1에 따른 수상이용시설(서울함) 및 그 밖의 시설(시민 여가 지원)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제13조〉

**제13조(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설치한 공원이용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원이용시설의 수탁자 또는 사용·수익허가 대상자(이하“운영자”라 한다) 선정은 일반경쟁 입찰에 의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공원 시설 및 퇴역 함정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관련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본 민간의 전문지식과 경험, 특히 안보·역사 체험을 할 수 있는 공원으로서 해군과의 협업 경험이 중요할 것이며, 전시·관람 행사 및 프로그램 등의 운영 경험을 보유한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장기적인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임.
- 따라서 서울함공원 민간위탁(재위탁) 사무는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와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에 해당하므로, 민간위탁 조례 제4조와 제6조의 규정을 충족한다고 판단됨.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1.~2. (생략)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생략)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2. (생략)
3. 문화·체육·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5.~8. (생략)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3)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4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위탁사무명, 추진근거 및 필요성, 위탁사무 내용, 위탁시설 개요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동의안에는 해당 내용<sup>5)</sup>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4〉

제4조4(민간위탁 동의안) ① 시장이 제4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                         |                                |
|-------------------------|--------------------------------|
| 1. 위탁사무명                |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 3. 위탁사무 내용              |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
| 5. 민간위탁기간               | 6. 수탁자 선정방식                    |
|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8.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

5) 3. 주요내용 참고

#### 4) 민간위탁(재위탁) 추진 절차

- 민간위탁 재위탁(공모) 사업은 사전조사 → 추진계획 수립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개최 → 시의회 보고(동의) → 시의회 의결 → 적격자 심의 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 서울함공원은 2023년 12월 31일로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 2023년 4월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sup>6)</sup>이 수립된 이후, 현재까지 관련 절차에 따라 추진되고 있음.



#### 5)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종합평가

- 자체<sup>7)</sup> 성과평가
  - 2023년 코로나 엔데믹 도래 및 전시 공간 개선으로 유료 관람객 증가를 기대하고 있으며, 서울함공원의 인지도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해군음악회, 어린이날 행사, 미술대회, 사진 공모전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6) 서울함공원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문화홍보과-2256, 2023.4.19.

7) 참고: 2. 자체 성과평가 - 미래한강본부 제공



- 또한, 안보·평화·역사 체험의 장소로서 학생들의 안보 교육 체험 학습장 및 청소년 직업체험장으로 활용 중에 있으며, 마포구청에서 주최하는 ‘마포 시티투어’ 방문지로 일반 시민에게도 안보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위와 같은 자체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 이견은 없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미술대회, 해군음악회 등 주요 프로그램이 2년간 중단되었는바,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상설 프로그램 외에 온라인 특별 프로그램 등을 보완해야 할 것이며, 유료 관람객 유치를 늘리기 위하여 홍보 역시 적극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 ○ 종합성과 평가

-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시행한 2023년 제2차 종합성과평가(3월~7월) 결과에 따르면 사업 인프라, 사업 활동, 사업성과, 만족도 제고 노력 등을 평가한 결과 상대적으로 성과평가 점수가 낮은 75.18점을 받았음.
- 이는 다양한 경험을 갖춘 인력 배치, 분기별 예산편성, 중대재해사고 발생률 zero 달성, 해군과의 협력체계가 원활 등의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복무관리 문제, 안전의무조치 이행 계획 및 운영 미비,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외부 사인물 정비 미비, 종합적인 재난안전계획 수립·시행 미비, 서울함 상황과 직원 역량을 고려한 합리적인 성과 목표 설정 등에 대한 개선요구 등의 부정적인 평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미래한강본부 내에서도 현장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sup>8)</sup>시 통계자료 작성 등 분석 기능이 미비하다는 내용을 개선점으로 제시한 만큼, 형식적인 만족도 조사에 그치지 않도록 만족도 관련 설문을 상세히 구성하고 그 결과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8) 2022년 서울함 페스티벌 행사 시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 707명 참여, 95.6% 만족

○ 민간위탁금 평가

- 2021년 민간위탁금 세부 내역을 보면, 인건비 규모에 비해 운영비 및 사업비<sup>9)</sup>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이는 공원시설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의 질적 저하로 민간위탁 운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에 지양해야 할 점이나, 이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으로 보임.
- 다만, 2022년부터 운영비 및 사업비 규모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내센터 옥상 파라솔 설치, 한강의 발원지 지도 개선 등 실질적인 성과와 관계없는 사업<sup>10)</sup>이 집행된 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올해와 같이 대규모 안전 점검 후 유류 제거, 전시시설 개선 등 적절한 사업<sup>11)</sup>을 시행하도록 해야 할 것임.

〈민간위탁금(최근 5년간) 현황〉

(단위: 천원)

연 도	총액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21년	723,307	민간위탁금	인건비 311,742, 운영비 131,548, 사업비 143,810, 기타 136,207
2022년	819,199	민간위탁금	인건비 317,391, 운영비 192,704, 사업비 154,840, 기타 154,264
2023년	965,718	민간위탁금	인건비 366,098, 운영비 286,053, 사업비 167,574, 기타 145,993
2024년	999,948	민간위탁금	인건비 399,189, 운영비 268,630, 사업비 180,961, 기타 151,168
2025년	1,067,964	민간위탁금	인건비 435,271, 운영비 270,000, 사업비 195,417, 기타 167,276

9) 운영비: 공원운영비+시설관리비 / 사업비: 프로그램 운영비+홍보비

10) 1. 서울항공원 안내센터 옥상 파라솔 설치: 22,000천원  
 2. 미디어월 운영비(영상 편집 등): 증액 15,000천원  
 3. 한강의 발원지 지도 개선: 10,000천원  
 4. 기타 시설관리비 및 일반운영비: 14,156천원

11) 1. 서울함 지하 유류 제거 및 청소: 40,000천원  
 2. 서울함 그레이트선셋 쉼터데크 조성: 37,000천원  
 3. 냉난방기 설치: 10,000천원  
 4. 서울함 사관실 전시개선: 8,000천원

## 6) 종합의견

- 공원 시설 및 퇴역 함정을 갖추고 있는 서울함공원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관련 시설에 대한 전문지식과 운영경험, 해군과의 협업 경험, 전시·관람 행사 및 프로그램 등의 운영 경험 등이 중요한바, 이러한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이 해당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최근의 성과평가 결과 다양한 개선요구 지적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평가점수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러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래한강본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평가 역시 꾸준히 시행하여 서울함공원을 포함한 민간위탁 시설 운영의 질적 향상에 힘써야 할 것임.

## 5. 질의 및 답변요지:

- 현 운영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위탁기관의 전문성 확보 방안과 함상공원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위탁금 규모나 산출 내역의 적정성에 대해 면밀히 재검토하여 우리 위원회와 상의한 이후에, 위탁기관 선정 공모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청 하였음.

## 6. 토론요지: 없 음

## 7. 심사결과: 원안 가결

## 8.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 서울특별시 서울함공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169
----------	------

제출년월일 : 2023년 8월 14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 가. 서울함공원은 서울함(호위함)과 참수리 고속정, 돌고래급 잠수함 등이 전시되어 있는 공원으로서 호국 정신을 고취함과 동시에 시민들에게 도심의 휴식 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임
- 나. 서울함공원 시설 유지관리 외에도 각종 전시·공연 프로그램과 고객 홍보 및 마케팅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중이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서울함공원 시설관리 및 운영
- 나. 위탁유형 : 시설위탁
- 다. 위탁기간 : 3년(2024. 1. 1. ~ 2026. 12. 31.)
- 라.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제13조 (위탁운영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추진 필요성

- 서울함공원의 시설관리 및 각종 행사 진행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성과 노하우가 필요한 사무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추진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성 강화가 필요하며
- 안보·테마 공원으로서 해군과의 협업, 관람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안보 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해 재위탁 추진코자 함

마. 위탁사무내용 : 서울함공원 시설관리 및 운영

- 함상공원 관리 : 공원 청소 및 관리, 시설물 유지보수 및 경비, 이용자 안전 확보
- 프로그램 운영 : 전시기획, 문화공연, 체험행사 등 프로그램 운영
- 홍보·마케팅 :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홍보 및 관람객 유치
- 성과관리 : 연간 운영성과 분석 및 활성화 방안 마련·시행
- 기타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에서 요청하는 사업 수행

바.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마포나루길 407(망원한강공원 내 리틀야구장 옆)
- 규 모 : 대지면적 8,275 $m^2$
- 시설물 : 안내센터(485 $m^2$ , 2층), 퇴역함정 3척, 도교 및 정박시설, 미디어월 등



< 시설별 위치도 >



< 서울함 >



< 고속정 >

- 인력현황 : 8명
  - 센터장 1명, 행정·안내반 3명, 전시·행사반 2명, 시설·미화반 2명
- 위치도



사.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공개모집)

아. 소요예산 : 금966백만원(2023년 예산)

- 인건비 366백만원, 운영비 286백만원, 사업비 168백만원, 기타 146백만원

자.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2023. 7. 5.)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제12조

제12조(공원이용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한강공원의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별표 1**에 정한 공원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서울함공원은 별표 1에 따른 수상이용시설(서울함) 및 그 밖의 시설(시민 여가 지원)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제13조

제13조(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설치한 공원이용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3. 문화·체육·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4.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나. 예산조치 : 2024년 민간위탁 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종합성과평가 결과 75.18점

※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종합성과평가 대상 사무)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 작성자 : 미래한강본부 한강문화관광과 윤성일(☎ 3780-0735)